

I. 부당청구 유형

-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또는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이상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
-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(기관)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
- 활동지원인력(기관)이 수급자의 바우처카드를 보관하고 사용하는 행위

II. 바우처 이상결제 유형

- 소급결제
 - 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 직후 실시간으로 결제하지 않고 사후에 한번에 결제하는 이상결제 유형
- 중복결제
 - 1:1 서비스 제공원칙 외 동시에 복수의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서로 다른 이용자의 결제시간이 중복되는 이상결제 유형
- 심야결제
 - 통상적인 서비스 제공시간이 아닌 심야시간에 결제가 이루어진 이상결제 유형
- 예외결제(ARS,유선)
 - 결제단말기가 정상적으로 보급되어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결제수단(ARS, 유선)을 사용하는 이상결제 유형

* 신규제공인력의 경우 단말기 미보급 등의 사유가 존재하므로 확인 필요

□ 연속결제

- 한 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또 다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동시간 내 이루어진 이상결제 유형

□ 선결제

- 활동지원인력이 이용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전에 미리 결제

□ 친인척결제

- 가족간에 급여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없으나 결제
(활동지원인력과 이용자간 가족관계 확인)

III. 부정부당청구 유형별 조사방법

- (수급자 카드수거 사용) 수급자가 지적·자폐장애 이거나 만 12세 이하 아동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활동보조인이 수급자 카드 보관 가능
* 그 외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청구로 간주
- (단말기 예러) 시스템 유지보수, 단말기 정비기록, 서비스제공 기록지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부정수급 여부 판단
- (이상결제 및 부정사용 의심사례)에 해당되는 제공인력,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기록지, 결제시간 등을 점검하여 부정 의심사례 확인
 - 해당하는 결제내역과 서비스 제공기록지 비교 후 실제 서비스 시간을 기재하도록 지도
- (일괄결제)의 경우, 제공기록지 특이사항란에 사유 기록 여부 확인
 - * 해당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향후 사유를 기록하도록 지도
- (중복결제)의 경우, 서비스 내용 및 동시간대에 중복하여 결제된 사유

집중 확인

- (심야결제)의 경우, 서비스 제공기록지에 기재된 서비스 제공 시간과 결제 내역의 시간 확인
 - 심야시간에 서비스 제공한 경우 서비스 내용 및 제공기록지 확인
- (예외결제(ARS,유선))의 경우, 서비스 제공기록지 특이사항란에 사유 기재를 확인하고, 부득이하게 예외결제를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 후 현장에서 실시간 결제할 수 있도록 안내
- (연속결제)는 이용자 주소, 제공기록지 상의 서비스 내용과 결제 확인
- (선결제등 기타결제)의 경우, 서비스 제공기록지 상의 서비스 내용 및 결제 확인
- 다음의 경우 제공기관 또는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카드를 소지한 후 결제했는지 확인
 - ① 중복결제 이용자
 - ② 일괄결제 이용자의 결제시간이 유사한 시간대에 집중된 경우
 - ③ 심야시간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복수의 결제가 있는 경우
 - ④ 심야시간 대에 일괄결제를 진행한 경우
-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통해 지침 상 금지된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